「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1월 1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1월 2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체계적·효율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명, 용어 등을 정비하고,「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 중 행정기구 변경사항(과 명칭 등)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대하여 법령 제정사항 반영하고자「주택법」제43조제9항을「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조)

○ 정의에 대하여「주택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용어 정의에 대한 근거 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

○ 적용범위를 각각의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호로 구분하고자 함. (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경제건설국장을 추가하고, 민원과장을 허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천소영)

❍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근거법명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관리하고자
「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2016년 제정된 법으로

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근거 상위법을 변경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기존 기획실장, 민원과장에서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허가과장으로 변경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관리업무”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호”를 “제10호”로 한다.

제3조 중 “내의 「주택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검사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15세대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한 공동”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5조제3항 중 “조명시설 에”를 “조명시설에”로, “이내에서 비용”을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실장, 민원과장”을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관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 제14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공동주택관리법」 ---제1항제1호----------. 2. ---------- 제10호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검사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제3조(적용범위) ---------- ----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15세대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한 공동----------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신 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신 설>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신 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5조(지원대상) ①·②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조명시설 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조명시설에 ---------- ---------- ------ 이하의 금액--------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부군수, 기획실장, 민원과장, 건설	③---------- -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허가

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과장----------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